



# 운행허가조건

## ● 대상시설

연번	시설물명	위 치	시설규모	비고
1	장지1교	장지동 649	폭50m, 연장26m	
2	장지2교	장지동 514	폭20m, 연장15m	

1. 제한차량 운행시 귀사에서 제출한 실시설계 보고서(중량물 수송로 보강공사)에 의거 통과 교량의 보강공사를 시행후 운행할 것.
2. 보강공사 시행은 귀사의 책임하에 정밀하게 시행하고 우리 사업소의 확인을 득한후 운행할 것.
3. 도로시설물의 거동상태를 파악할수 있도록 시설물에 변위계 및 변형률계를 설치하여 계측값을 관리할 것.
4. 제한차량의 **도로시설물(교량) 통과 전·후** 해당시설물에 대해 정밀점검 대상부재에 대한 현장조사를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외관 조사망도를 작성 제출**할 것.
5. 제한차량 운행전·후 외관 조사망도를 비교 검토후 도로시설물의 이상이 발견시 귀사에서는 보수 계획서를 수립 우리 사업소 승인을 득한후 원상복구 할 것.



## 광주시



수신 서울특별시(교량안전과장)

(경유)

제목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중량물 운송)에 따른 업무협의 회신

---

1.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4451(2018.3.15..)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전력공사 경기건설지사의 제한차량 운행허가(중량물 운송) 신청과 관련하여, 우리 시 관할 도로의 운행가능 여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 회신의견(조건부 동의)
- 통로암거 등 통과구조물에 대하여 통과 전 계측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통과 후 구조물의 변이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허가차량 운행 완료 후 사후 조치(도로구조·시설 원상 복구(가교 등), 도로구조 성능 및 도로포장 상태 평가, 도로구조·시설 손상 복구, 인적·물적 피해 보상 등)를 수행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중량물 운송 작업시 도로교통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차량통행 등)계획을 준수하여야 함.
  - 허가받아 운행하는 차량이 도로의 구조·시설 및 제3자 등에게 피해를 발생시킬 경우 원상회복 및 보상 등의 책임은 운행허가를 받은 자, 차량을 운행한 자 또는 허가차량의 운행을 사실상 관리한 자(허가차량 운행 책임자)에게 있음.
  - [광주시 건설과 하천점용팀] 곤지암읍 삼리 612-4번지 외 1필지 상 곤지암천 구역 내 하천점용(임시가도) (2018.4.1.~2018.6.15.)을 득하고, 사용종료 후 원상 복구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함. 끝.





# 성남시



수신 서울특별시(교량안전과장)

(경유)

제목 제한차량운행허가 신청(중량물운송)에 따른 재협의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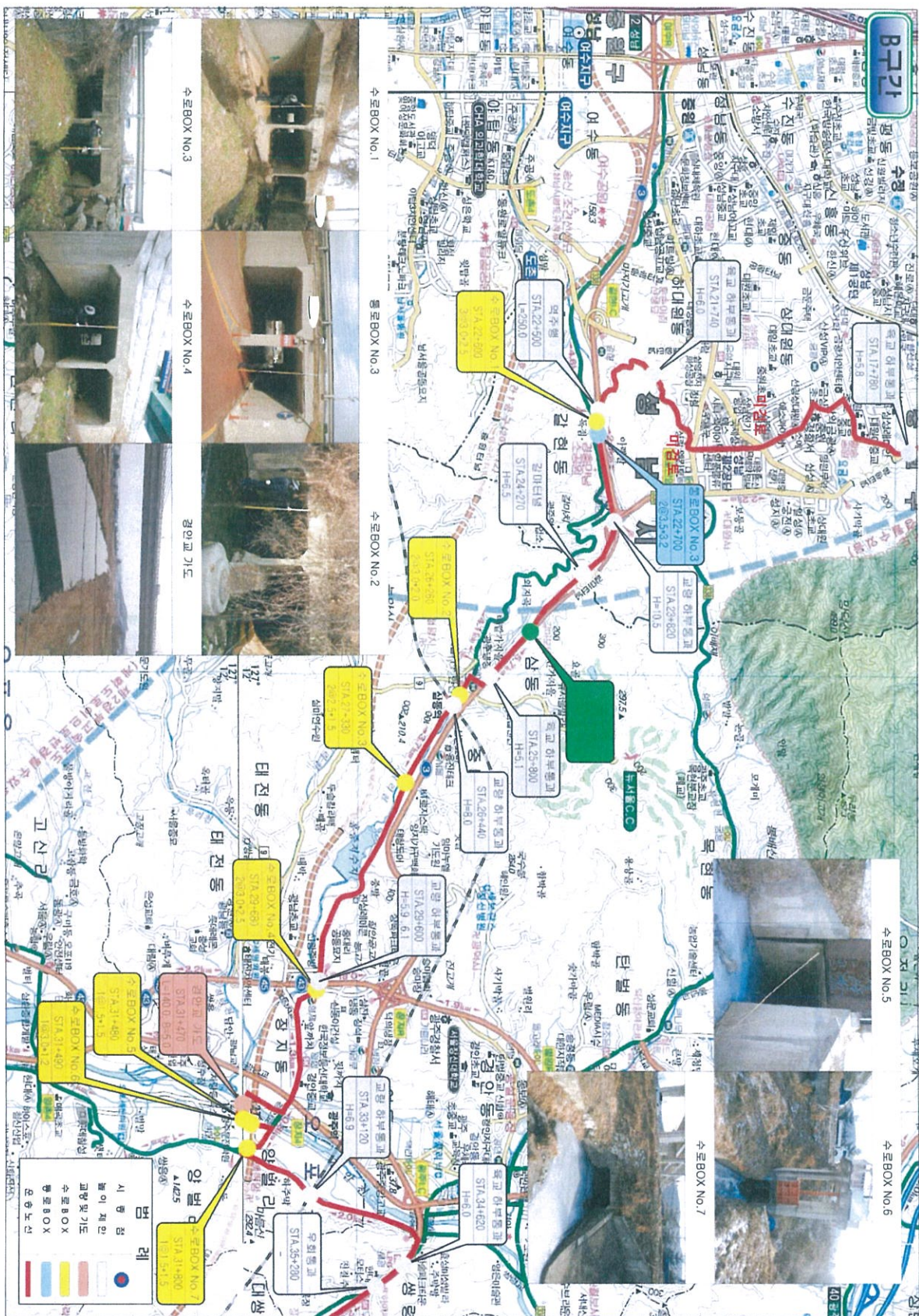
1.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4451(2018.3.15.)호와 관련입니다.
2. 중량물 운송 신청노선에 대하여 불임 횡단구간의 구조물(하천복개도로) 안전성검토가 누락되어 있어 알려드리니 운행 전에 검토 및 재협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구간노선도1부. 끝.



주무관	이병건	도로관리팀장	장문석	도로과장	03/22 김윤철
-----	-----	--------	-----	------	--------------

협조자



제2장 과업의 현황